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49
----------	-------

발의연월일 : 2025. 6. 24.

발 의 자 : 성일종 · 김기현 · 장동혁
김미애 · 이인선 · 이종배
박덕흠 · 최수진 · 인요한
고동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항일독립운동과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및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는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 왔고, 이를 근거로 일부 유족들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그러나,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이라는 이유로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해 위원회도 2025년 1월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 입법을 권고한 상태임.

이에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및 그 동조세력 등에 의해 희생당한 전쟁희생자에 대한 보상의 근거 및 절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전쟁희생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과거와의”를 “전쟁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
상을 함으로써 과거와의”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쟁희생자”란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 참전한 외국군, 군·경찰 등 공권력 및 그 동조세력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26조에 따른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전쟁희생자 유족”이란 전쟁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전쟁희생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전쟁희생자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4장의2(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1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전쟁희생자 보상

제40조의2(전쟁희생자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전쟁희생자와 전쟁희생자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쟁희생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희생자 유족의 심사·결정
2. 전쟁희생자 또는 전쟁희생자 유족의 보상금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
3. 전쟁희생자와 전쟁희생자 유족에 대한 그 밖의 지원
4.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보상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심사와 같은 항 제2호의 심의를 위하여 각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

다.

⑤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직원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⑥ 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3(보상 등) ① 국가는 전쟁희생자와 전쟁희생자 유족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전쟁희생자의 일실회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및 위자료 등(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전쟁희생자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40조의4(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전쟁희생자 또는 전쟁희생자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제26조의 진실규명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상금등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5(심의와 결정)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제40조의6(결정서 송달)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의7(재심의)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제40조의5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전쟁희생자 또는 그 유족은 제40조의6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와 송달에 관하여는 제40조의5 및 제40조의6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의5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제40조의8(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9(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40조의10(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11(결정전치주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40조의5에 따른 결정기한이 지나도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조의12(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상은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또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

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40조의13(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살아있거나, 한국전쟁과 관련 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4. 보상금등 심의 과정에서 전쟁희생자의 부역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0조의14(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전쟁희생자의 부역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쟁희생자·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상심의위원회에 통보하

여야 한다.

제40조의15(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41조 중 “위원회 위원”을 “위원회 또는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으로, “위원회 직원”을 “위원회등 직원”으로, “위원회의 위촉에”를 “위원회등의 위촉에”로, “관계자는 위원회의”를 “관계자는 위원회등의”로, “밖에 위원회의”를 “밖에 위원회등의”로 한다.

제42조 중 “위원회의”를 각각 “위원회등의”로 한다.

제43조 중 “위원회가”를 “위원회등이”로 한다.

제44조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 및 보상심의위원회의”로 한다.

제4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위원회의”를 각각 “위원회등의”로 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거나 보상금등을 받게 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쟁희생자 보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및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1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 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전쟁희생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전쟁희생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전쟁희생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전쟁희생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u> <u>기본법</u> 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 학살 ·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u>과거와의 화해</u>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u><신 설></u>	<u>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u> <u>및 전쟁희생자 보상 등에 관한</u> <u>법률</u> 제1조(목적) ----- ----- ----- ----- ----- -----<u>전쟁희생자 및 유족에</u> <u>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u> <u>으로써 과거와의</u>----- -----.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u>전쟁희생자</u>”란 <u>한국전쟁 전</u> <u>후 인민군 등 대한민국의 정</u> <u>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u> <u>을 적대시하는 세력, 참전한</u> <u>외국군, 군 · 경찰 등 공권력</u> <u>및 그 동조세력에 의하여 사</u> <u>망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후</u> <u>유장애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u>

<신 설>

26조에 따른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전쟁희생자 유족”이란 전쟁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전쟁희생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전쟁희생자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4장의2 전쟁희생자 보상

제40조의2(전쟁희생자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전쟁희생자와 전쟁희생자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쟁희생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 쟁희 생자 유 족의 심 사 · 결
정

2. 전 쟁희 생자 또는 전 쟁희 생자
유 족의 보 상금 등의 심 의 · 결
정 및 지 급

3. 전 쟁희 생자와 전 쟁희 생자 유
족에 대 한 그 밖의 지 원

4. 그 밖 에 보 상 등 과 관 련 하 여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사 항

③ 보 상심 의 위 원 회는 위 원 장 1
명 을 포 함 한 15명 이 내의 위 원
으 로 구 성 하 며, 위 원 장은 국 무
총 리가 되 고 위 원은 학 식 과 경
험 이 풍 부 한 사 람 과 관 계 공 무
원 중 에 서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국 무총 리가 임 명
하 거 나 위 촉 한 다.

④ 보 상심 의위 원 회는 제 2 항 제 1
호 의 심 사 와 같 은 항 제 2 호 의
심 의 를 위 하 여 각 각 10명 이 내
의 위 원 으 로 구 성 된 분 과 위 원
회 를 둘 수 있 다.

⑤ 보 상심 의위 원 회 의 위 원 · 직
원 의 보 호 에 관 하 여 는 제 30 조
를 준 용 한 다.

⑥ 보 상심 의위 원 회 와 분 과 위 원

<신 설>

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3(보상 등) ① 국가는 전쟁희생자와 전쟁희생자 유족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전쟁희생자의 일실탁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및 위자료 등(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전쟁희생자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신 설>

제40조의4(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전쟁희생자 또는 전쟁희생자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제26조의 진실규명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상금등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5(심의와 결정)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제40조의6(결정서 송달)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의7(재심의)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제40조의5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전쟁희생자 또는 그 유족은 제40조의6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와 송달에 관하여는 제40조의5 및 제40조의6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의5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제40조의8(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u>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40조의9(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u> <u>제40조의10(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u> <u>제40조의11(결정전치주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40조의5에 따른 결정기한이 지나도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u> <u>제40조의12(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 이 법</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에 따른 보상은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또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40조의13(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 설>

는 보상금등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살아있거나, 한국전쟁과 관련 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4. 보상금등 심의 과정에서 전쟁희생자의 부역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0조의14(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전쟁희생자의 부역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쟁희생자·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신 설>

제4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
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감정
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
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
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
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
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상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의15(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
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4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또는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위원회
등 직원-----위원
회등의 위촉에-----

--관계자는 위원회등의-----

-----밖에 위원

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회등의----- -----.
제42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자문기구의 구성원·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자격사칭 금지) ----- 위원회등의----- -----위원회등의----- -----.
제4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진실화해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등이----- ----- -----.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 ----- --.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신설>	제45조(벌칙)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거나 보상금등을 받게 한 사람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u>위원회의</u>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u>위원회의</u>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2.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u>위원회의</u> 권한을 행사한 자 3.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u>위원회등의</u>----- ----- --<u>위원회등의</u>----- ----- 2. ----- ----- <u>위원회등의</u>----- 3. (현행과 같음)
---	--